

관련 조항	변경전	변경후	변경 내용
제 2-2조 ④항	<p>제2-2조 예금수수료</p> <p>① 전월 평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(음의 값)인 통화 예금의 경우, 은행은 예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동 수수료는 월 평균 잔액이 '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' 이상인 경우, 월 평균 잔액에 대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. 동 수수료율은 해당 통화의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수수료율은 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지된 변경일부터 적용된다.</p>	<p>제2-2조 예금수수료</p> <p>① 전월 평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(음의 값)인 통화 예금의 경우, 은행은 예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동 수수료는 월 평균 잔액이 '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' 이상인 경우, 월 평균 잔액에 대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. 동 수수료율은 해당 통화의 중앙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은행은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또는 변경 즉시 통지한다.</p>	<p>예금수수료율 변경시 고객에게 통지</p>